

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5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년 6월 18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상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현행 인사청문회 조례는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, 위원 선임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 및 개선하도록 함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전단 중 “이 선임 및”을 “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”를 “이를 행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